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 번호	16144
----------	-------

제안연월일 : 2015. 7.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1. 위원회안의 제안경위

가. 2014. 11. 20.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함.

나. 2015. 5. 1.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견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 민원처리 개선 및 청원심사 활성화’ 등 3개 의제에 대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2015. 7. 9.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월 임시회 명문화’ 등 2개 의제를 추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라. 2015. 7. 9.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총 5개의 의제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위원회안의 제안이유

급증하는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여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나,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설정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는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이에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위원회안의 주요내용

-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
- 나.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안 제53조).
- 다. 헌법재판소는 중국결정이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 라. 위원회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제1항).
- 마.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안 제72조).
- 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25조).
- 사.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7조의3 신설).

4. 부대의견

현재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國會運營基本日程”을 “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 감사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매 짝수月(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日(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를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日로”를 “30日(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에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최(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제5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중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중국 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판단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단,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을 따른다)
3.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72조 본문 중 “土曜日是 午前 10時”를 “대정부질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5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부된 민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결과를 조사요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조사기간의 연장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5條의2(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 등) ①議長은 國會의 年中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交渉團體 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매년 12月 31日까지 다음 年度의 <u>國會運營基本日程</u>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舉후 처음 구성되는 國會의 당해年度의 國會運營基本日程은 6月 30日까지 정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p> <p>1. <u>매 짝수月(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日(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臨時會를 集會한다.</u> 다만, 國會議員總選舉가 있는 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p> <p>2. 定期會의 會期는 100日로,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臨時會</p>	<p>第5條의2(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 등) ①----- ----- ----- ----- <u>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u>----- . ----- ----- ----- .</p> <p>②----- ----- ----- .</p> <p>1. <u>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u>----- ----- ----- . ----- ----- -----<u>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u> <u>집회한다.</u></p> <p>2. ----- -----</p>

의 會期는 30日로 한다.

3. (생략)

第53條(閉會중 常任委員會의 定例會議) ①常任委員會(國會運營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는 閉會중 最少한 月 2回 정례적으로 開會(이하 “定例會議”라 한다)한다. 다만, 情報委員會는 最少한 月 1回로 한다.

②常任委員會는 定例會議의 開會日을 委員會의 議決로 定하되, 1回는 미리 그 開會 週·曜日을 지정하여 자동 開會한다.

③ (생략)

④常任委員會가 定例會議 當일의 議事日程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委員長이 幹事와 協議하거나 委員會의 議決로 會議을 延長할 수 있다.

第58條(委員會의 審査) ① ~ ⑦

-----30日(8월 16일 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3. (현행과 같음)

제53조(閉會중 常任委員會의 定例會議) ①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에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최(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第58條(委員會의 審査) ① ~ ⑦

(생략)

<신설>

⑧·⑨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중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중국 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판단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第65條(聽聞會) ①위원회(소위원

第65條(聽聞會) ① 위원회(소위원

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부터 證言·陳述의 청취와 증거의 採擇을 위하여 그 議決로 聽聞會를 열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法律案의 審査를 위한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の 1 이상의 요구로 開會할 수 있다. 다만, 制定法律案 및 전부개정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規定에 의한다.

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단,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을 따른다)
3.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삭 제>

③ ~ ⑧ (생략)

第72條(開議) 本會議는 午後 2時 (土曜日은 午前 10時)에 開議한다. 다만, 議長은 각 交渉團體 代表議員과 協議하여 그 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第125條(請願審査·보고등) ① ~

③ (생략)

④委員會는 그 議決로 委員 또는 專門委員을 現場이나 關係機關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⑤ ~ ⑦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第72條(開議) -----
(대정부질문을 포함한다)-----

第125條(請願審査·보고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부된 민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결과를 조사요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